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자치행정과-18891
등록일자	2015.10.31.
결재일자	2015.1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직위대리	구청장
오성희	임동호	옥종식	이창훈	주윤중	11/02 신연희
협조자					

- 2016. 4. 13. 강남구의회의원(아선거구) -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에산』 변경

□ 재선거 사유 확정상황

선거구명 (정 수)	궐원의원			재선거실시 사 유	사유확정일 (발생일)	선거실시 예 정 일
	정당명	성 명 (한 자)	연 령			
강남구 아선거구 (3)	새정치 민주연합	***	57세	***** ***** (공직선거법 제264조)	2015.9.24. (2015.9.10.)	2016.4.13.

□ 선거관리경비 확보

- 2015. 9. 24 강남구 선관위 재선거사유 통보 및 선거경비납부요구 : 240,426천원 (2015. 10. 12까지)
- 2015. 10. 5 선거관리에산 확보 방침 (예비비 사용)
- 2015. 10. 6 주요시책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 및 예비비 배정승인
- 2015. 10. 16 **재선거 경비 납부변경 요구 (강남구선관위)**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선관위 집 행	계	선관위	강남구		
			소계	공통경비(50%)	고유경비
변 경 전	470,209	229,783	240,426	229,783	10,643
변 경 후	470,209	459,566	10,643	0	10,643

변경사유

국가의 공직선거와 구역의 전부가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가 겹치는 경우)의 공통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관위 통보에 따라 우리구 고유경비 부담분만 납부하고자 함.

강 남 구

(자 치 행 정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직선거법 제27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및 제26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예산확보 및 검토내용 적시하였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6. 4. 13. 강남구의회의원(아선거구) -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예산』 변경

2016. 4. 13(수) 실시하는 강남구의회의원(아선거구) 재선거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국가의 공직선거와 구역의 일부가 겹치는 경우 공통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관위 통보에 따라 우리구 고유경비 부담분만 납부하고자 함.

I 재선거 개요

□ 재선거 사유 확정상황

선거구명 (정 수)	궐원의원			재선거실시 사 유	사유확정일 (발생일)	선거실시 예 정 일
	정당명	성 명	연 령			
강남구 아선거구 (3)	새정치 민주연합	***	57세	***** ***** (공직선거법 제264조)	2015.9.24. (2015.9.10.)	2016.4.13.

□ 선거 일 : 2016. 4. 13 (수) 06:00 ~ 18:00

□ 대상투표구 및 선거인 수

[단위: 名, 2015. 8. 31 現在]

투 표 구	인 구 수	세 대 수	선거인 수 (만 19세 이상)	예상 사전투표자
28개 투표구 (개포2, 일원본·1동, 수서, 세곡동)	129,368	49,680	105,000	11,000

II 추진 경과

- 2015. 9. 24 구의원 당선무효 및 재선거 사유 통보 : 강남구 선관위
재선거 경비납부요구 : 240,426천원 (2015. 10. 12까지)
- 2015. 10. 5 선거관리예산 확보 방침 (예비비 사용)
- 2015. 10. 6 주요시책심의회 심의 (월안 가결)
- 2015. 10. 12 예비비 배정 승인
- 2015. 10. 16 재선거 경비 납부변경 요구 (강남구선관위)

Ⅲ

소요 경비

(단위 : 천원)

선관위 집행	계	선관위 (50%)	강남구			비 고	
			소계	공통경비 (50%)	고유경비		
계	470,209	229,783	240,426	229,783	10,643		
선관위 위탁경비	선거관리일반	38,276	19,118	19,158	19,118	40	당선증
	선거운동관리	136,999	67,187	69,812	67,187	2,625	점자형선거공보
	통합명부관리	61,990	30,995	30,995	30,995		
	투표관리	105,978	49,524	56,454	49,524	6,930	투표용지인쇄
	개표관리	13,490	6,745	6,745	6,745		
	계도홍보	13,976	6,988	6,988	6,988		
	감시단속	96,498	47,749	48,749	47,749	1,000	신고포상금
	예비경비	3,002	1,477	1,525	1,477	48	고유경비

- 경비부담단체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 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4조 2항 1호)
-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 4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Ⅳ

변경 사항

(단위 : 천원)

선관위 집행	계	선관위	강남구		
			소계	공통경비 (50%)	고유경비
변경 전	470,209	229,783	240,426	229,783	10,643
변경 후	470,209	459,566	10,643	0	10,643
변경사유	국가의 공직선거와 구역의 전부가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가 겹치는 경우)의 공통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관위 통보에 따라 우리구 고유경비 부담분만 납부하고자 함.				

V

행정 사항

- 선거경비 납부 2015. 11. 3 [강남선관위]